

감 사 보 고 서

학교법인 삼육학원 이사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삼육학원의 2017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18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
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(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) 학교법인 삼육학원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삼육학원의 2018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(다음 : 지적사항 있으면 나열 또는 별첨함)

2018년 4월 13일

학교법인 삼육학원

감사 권기용

감사 최호성

권기용
최호성

피감사자 (임회인)

직명 법인실장

성명 박세현

박세현

※ 반드시 자필서명 날인할 것

(별지 제1호 서식)

감 사 보 고 서

교육부 장관 귀하
학교법인 삼육학원 이사회 귀중

사립학교법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제41조에 의하여, 학교법인 삼육학원의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,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
감사결과 (다음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) 학교법인 삼육학원의 재산상황·회계와 이사회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(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 명시)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.

다음 : 지적사항 내용

구 분	재산·회계감사 지적사항		이사회 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(건)	비고 <지적사항 없는 경우 : 지적사항 없음(표기)>
	건수	금 액		
1. 법인 일반업무 관련				지적사항 없음
2. 법인 수익사업 관련				지적사항 없음
3. 학교 관련				
4. 부속병원 관련				
계				

- 붙임 : 1. 학교법인 삼육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(별지 제1의1호 서식)
2.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제41조에 의거 작성하는 내부 감사보고서

2018 년 04 월 13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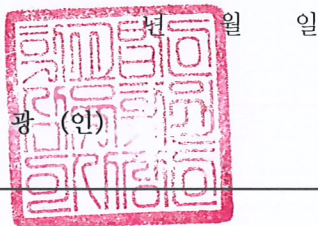
학교법인 삼육학원
 감사 권기용 (인)
 (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 2296호)
 감사 최호성 (인)

※ 공인회계사를 선임한 대학에 한하여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기재

피감사 기관장

학교법인 삼육학원

이사장 황춘광 (인)



(별지 제1의1호 서식)

학교법인 삼육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

(회계연도 : 2017 년 03 월 01 일부터 2018 년 02 월 28 일까지)

· 지적사항(내용) : 법인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 구분 표시

감사결과 지적사항(내용)	피감사 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
<p>(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붙임)</p>	
<p>피감사기관장 학교법인 삼육학원 이사장 황 춘 광 직인 (사인)</p>	



(법인 일반업무회계 · 수익사업회계)